

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

일부개정법률안

의안 번호	3016
----------	------

제출연월일 : 2024. 8. 20.

제 출 자 : 정 부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종전에는 특수임무공로자와 그 자녀 등에 대하여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교육지원 대상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 본인과 그 부양의무자의 소득·재산을 고려하여 결정하도록 하였으나, 앞으로는 본인과 ‘생계 또는 주거를 같이 하는 가구원’의 소득·재산을 고려하여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자녀 등에 대한 교육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.

참고사항

이 법률안은 2024년 6월 28일 국회에 제출된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」(의안번호 제1184호)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,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.

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1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부양의무자(부양의무가 있는 배우자, 부모, 자녀 및 그 배우자를 말한다. 이하 같다)는”을 “가구원(교육지원 희망자와 생계 또는 주거를 같이 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은”으로 한다.

제11조의4제1항 중 “부양의무자”를 각각 “가구원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부양의무자가”를 “가구원이”로 한다.

제11조의5제1항 중 “부양의무자가”를 “가구원이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부양의무자”를 “가구원”으로 한다.

제70조 전단 중 “부양의무자가 없는”을 “부양의무자(부양의무가 있는 배우자, 부모, 자녀 및 그 배우자를 말한다. 이하 같다)가 없는”으로 한다.

제8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“생계급여·의료급여”를 “생계급여·주거급여·의료급여·교육급여”로 한다.

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[illegible]

자 및 교육지원 수급자와 그 부양의무자의 주거,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서류 등을 조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필요한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.

② (생략)

③ 국가보훈부장관은 교육지원 희망자 및 교육지원 수급자와 그 부양의무자가 제1항에 따른 서류 또는 자료의 제출을 거부·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에는 교육지원 신청을 각하하거나 교육지원을 중지할 수 있다.

④ (생략)

제11조의5(금융정보등의 제공) ①
국가보훈부장관은 「금융실명
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
률」 제4조제1항과 「신용정보
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」
제3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
육지원 희망자와 그 부양의무자
간 제11조의3제2항에 따라 제출
한 동의 서면을 전자적 형태로
바꾼 문서에 의하여 금융회사
등(「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

-----가
구원-----

② (현행과 같음)

③ _____

-- 가구원이 -----

④ (현행과 같음)

제11조의5(금융정보등의 제공) ①

----- 가구원이 -----

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 및 「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5조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의 장에게 금융정보·신용정보 또는 보험정보(이하 “금융정보등”이라 한다)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.

② 국가보훈부장관은 교육지원수급자와 그 부양의무자의 교육지원 대상 자격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「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」 제4조제1항과 「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3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적사항과 조회기준일 및 조회기간등을 적은 문서 또는 정보통신망(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으로 금융회사 등의 장에게 금융정보등을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.

③ ~ ⑦ (생략)

② 가구원

③ ~ ⑦ (현행과 같음)

제70조(양로지원) 특수임무유공자 또는 그 유족(자녀는 제외한다)으로서 65세 이상인 남성이나 60세 이상인 여성(다만, 특수임무 부상자인 남성은 60세 이상, 여성은 55세 이상) 중 부양의무자가 없는 자(부양의무자가 있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)에 대하여는 국가의 양로시설에서 지원할 수 있다. 이 경우 특수임무유공자의 배우자는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로지원을 받게 되는 대상자와 함께 지원할 수 있다.

제80조의2(자료의 제공 요청 등)

① 국가보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주민등록정보, 가족관계등록사항, 재외국민등록사항, 군복무에 관한 자료, 국세·지방세에 관한 자료, 소득·재산에 관한 자료, 국민연금·건강보험 등 각종 연금·보험에 관한 자료, 생계급여·의료급여 수급에 관한 자료, 출입국 정보 등을 관계

제70조(양로지원) -----

----- 부양의무자

(부양의무가 있는 배우자, 부모,

자녀 및 그 배우자를 말한다. 이

하 같다)가 없는 -----

-----.

-----.

제80조의2(자료의 제공 요청 등)

① -----

생계급여·주거급여·의료급여

·교육급여 -----

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 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. 1. ~ 13. (생략) ② ~ ④ (생략)	-----. ----- ----- -----. 1. ~ 13. (현행과 같음) ② ~ ④ (현행과 같음)
---	--

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
1	안 제11조의3 (교육지원 신청)	종전에는 특수임무공로자와 그 자녀 등에 대하여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교육지원 대상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 본인과 그 부양의무자의 소득·재산을 고려하여 결정하도록 하였으나, 앞으로는 본인과 ‘생계 또는 주거를 같이 하는 가구원’의 소득·재산을 고려하여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자녀 등에 대한 교육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.

II.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근거 규정
1	안 제11조의3 (교육지원 신청)	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제1호 : 예상 비용이 연평균 10억원 미만

2. 상세 사유

- 교육지원을 위해 최근 5년간 생활수준조사를 신청한 대상자는 610명이고 생활수준조사 결과 비해당자는 178명이나,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지원을 받지 못한 대상자는 2명으로, 전체 신청자의 0.3%에 불과해 추가 예산 소요는 미미함
- 이에 따라, 법률 개정에 따른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시 기존 탈락인원이 수혜를 받을 것으로 보고 지원받지 못한 2명에 대한 추계를 작성함
 - 향후 5년간 연평균 5백만원 추가 예산 소요

III. 부대의견

- 최근 5년 생활수준조사 결과,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하여 지원을 받지 못한 인원은 소수임
- 다만, 동 제도는 신청주의이므로 완화된 조사기준이 시행되면 신청인원 및 수혜인원이 다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

IV. 작성자

○ 성명

주무관	사무관	과장	실장·국장
김미정	김진숙	윤석진	최병완

○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김진숙	044-202-5658	jinsk1204@korea.kr

* 주된 작성자의 연락처를 기재